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갑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81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25일

발 의 의 원 : 박갑상, 김동식, 김원규,
송영헌, 이시복, 임태상,
정천락 의원 (7명)

1. 제안이유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 건축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해 오는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건축자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 중앙정부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대구시는 여전히 법에 따른 하위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이전의 조례로 한옥 진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한옥 진흥 조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상위 법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지원대상 사업자에 유지 및 보수의 기술교육자와 관련 정보제공자, 장인과 목수 등이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자문이나 감독,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유지 및 보수,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우수건축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다. 우수건축자산의 건축을 위해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특례적용계획서에 해당 건축물의 가치와 보존·유지 및 활용방안, 특례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적인 설계도서, 주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등도 포함시키도록 하여, 공익적 효과와 인근지역의 피해정도 등을 엄격히 고려하여 특례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9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

- 마.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의체가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현행 한옥 진흥 조례로 운영 중인 한옥위원회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과 한옥등록의 절차 및 유효기간, 한옥 건축의 비용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을 현행 지원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한옥 건축비용의 용자지원에 대해서는 제도도입이후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 지원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보조지원만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안 제11조부터 제21조)
- 사. 등록한옥의 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옥보호지역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함. (안 제22조)
- 아. 시장이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존 및 활용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 자. 현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일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하되 종전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안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명시함.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법 및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키,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4조(우수건축자산 관리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

제5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한 가치와 보존·유지 및 활용 방안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제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 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 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자산 진흥 업무의 담당과장

4. 건축자산, 도시계획, 건축 등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⑤ 시장은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한옥위원회 설치·기능·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심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옥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정책 사항
 2.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심사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 중 전통건축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한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과장,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한옥재료 및 시공,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역사 등 한옥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분야의 관계공무원
3. 건축,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옥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한옥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옥밀집지역

2. 한옥구조로 주택단지 또는 민박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인 사업대상지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

3.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한옥과 인접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보호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한 시장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보호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한옥등록) ①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제1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한옥 :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7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16조(한옥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하 “등록한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8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5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제18조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 ①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 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전면수선(노후 한옥의 기능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행위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
 - 가.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
 - 나.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
2. 한옥을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신축, 개축, 재축과 증축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에 주 건축물을 별도로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
 - 가.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
 - 나.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
3. 한옥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한옥의 외관 등을 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

③ 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 20년
2. 제2항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 7년

④ 시장은 제2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의 지원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한옥의 소유자가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조사의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8조의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 혹은 등록예정자 등은 제14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과 함께 해당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시기)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 결정액의 3분의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결정액 범위에서 지급

제21조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8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가 제15조의 유효기간에 임의로 철거 혹은 멸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한옥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지원액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상환 등의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진다.

제2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등) ① 시장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보호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확장 및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을 매입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한옥보호지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건축적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경우

3. 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제47조·제58조·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생략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④ 생략
- ⑤ 시·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
 축설계약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생략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생략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
 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 ⑧ 생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
 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
 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③ 생략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